

법규 준수여부 평가서

	평가자	현장소장

항목	법규 조항 평가 항목	비고	평가결과	
			Y	N
환경안전보건법	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	사업제해 예방을 위한 기준, 구체적인 작업환경의 조성, 근로조건 개선, 정보제공	O	
	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	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	O	
	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	관리감독자 지정	O	
	제17조 안전관리자 선임	안전관리자 선임 확인	N/A	
	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	정기적인 안전 보건 교육	O	
	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	안전 보건에 관한 직무 교육	O	
	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	사업주는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 평가 및 조치	O	
	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	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	O	
	제57조 산업제해 발생 응급 조치 및 보고	산업제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됨.	O	
	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	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및 교육	O	
	제129조~131조 건강진단	일반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, 임시건강진단 실시	O	
	제25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임무	안전보건교육, 위험성평가, 작업환경측정, 건강검진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인 등	O	
	제99조 유해, 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	근로조건의 개선유무(소음 발생 장소)	O	
	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	안전, 보건에 관한 교육(정기, 특별교육)	O	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	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	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요인, 위험성 결정의 내용,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3년간 보존	O	
	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	협의체 구성 및 협의사항(작업의 시작시간, 작업장 연막방법, 대피방법 등)	O	
	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	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보관(1년)	N/A	
	제197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	사무적 근로자: 2년 1회 그 밖의 근로자: 1년 1회 이상	O	
	제3조 전도의 방지	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걸림상태로 유지	O	
	제8조 조도	초정밀작업: 750룩스(lux) 이상 정밀작업: 300룩스 이상 보통작업: 150룩스 이상 그 밖의 작업: 75룩스 이상	O	
	제9조 작업발판	작업발판 설치, 기계, 설비 작업높이로 조절	O	
	제16조 위험물등의 보관	위험물정에 대해 작업장과 별도의 장소에 보관	O	
	제21조 풍토의 조명	75룩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	O	
	제239조 위험물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등의 사용금지	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작업 금지	O	
	제42조 추락의 방지	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 작업발판 설치 안전보호구의 착용 여부 점검	O	
	제33조 보호구의 관리등	중장품 취급, 방진마스크 필터, 작업복 등 적합한 보호구 지급	O	
	제188조 고압이 풍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	고압이 풍어진 것,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	N/A	
	제189조 섬유로프 등의 점검	이상 발견 섬유로프 등을 즉시 교체	N/A	
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	안전보건관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 함	O		
제6조 종대산업제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	종대산업제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(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)	O		

현장: 20. 6. 24 (목)

	유	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	그 위반 행위 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그 기관에 벌금 부과	전부서	
중대재해처벌법	유	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	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보건 교육 이수(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	전부서	
	유	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	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의 명칭, 발생 일시와 장소,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 사실을 공표	전부서	
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	유	제9조 사업주,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	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	전부서	
	유	제10조 중대시민재해 발생 사업주,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및 양벌 규정	양벌 적용	전부서	
	유	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	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외 8개 항	전부서	
	유	제4조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	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 점검 외 4개 항	전부서	
	유	제5조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	산업재해 조사표 유지 부적합 및 산재 발생 대장 보유	전부서	
산업재해보상보험법	유	1.법 제36조,시행령21조:보험금어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2.법 제37조: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3.법 제40조: 요양급여	근로계약서		
근로기준법	유	1.법 제17조: 근로조건의 명시			
	유	2.법 제23-24조: 해고등의 제한			
	유	3.법 제41조,시행령 제20조: 근로자의 명부 및 기재사항			
	유	4.법 50조:근로시간	-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 시간을 초과금지. (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 초과 금지).	전부서	
	유	5.법 53-56조:연장근로 및 연장근로 제한,휴일등			
화재예방,소방시설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	유	1.소화기 구비 및 배치 : 배치도 2.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3.소방훈련(화재)	수시점검 1회/년 2회/년	전부서	
	유	4.소방기구 점검(작동상태 소화기 점검기록 유지)			
	유	1.법 제12조,령 제6조,규칙 6조: 폐기물상(정의),분리수거 2. 제13조, 형 제7조, 규칙 제9조~11조 3.법 제60,61조	1. 폐기물의 처리기준 - 지정 폐기물 : 폐오입, 폐폐인트(액상) - 사업장 일반폐기물 : 폐플라스틱, 폐비닐,폐장갑,잠스레기 등 - 재활용 폐기물 : 폐전선,폐금속, 폐종이, 캔, 병 등(분리수거)	전부서	
	유	1.제20조 제1항, 제2항 2.제22조 3.제24조 2항	유형되어 주변환경을 오염, 잔류성유기오염물질(중금속,지,사고,신고) 잔류성유기오염물질(수집,운반,보관,처리) 잔류성유기오염물질(신고)	전부서	
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	무				